

충청북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1. 12. 30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1년 12월 21일

○ 회부일자 : 1991년 12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74회 정기회

○ 제6차 내무위원회(1991. 12. 27)상정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유의재)

가. 제안이유

- 실업계 사립학교 학생의 실험 실습용에 직접사용하는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도세를 면제하므로서
- 산업인력 양성에 기여코자 함.

나. 주요골자

- 면제대상 : 학교법인이 학생의 실험실습용에 직접사용하는 차량 중 기, 입목, 항공기
- 면제세목 : 취득세, 등록세
- 적용시한 : 1994년 12월 31일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민귀식)

- 현행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에서 비과세대상이던 교육용재산이 동산·부동산 구분없이 취득시에는 비과세하였으나 1991년 12월 14일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4415호)되므로 토지·건축물등 부동산만이 비과세토록 됨에 따라 동산인 차량·증기·항공기·입목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었음.
- 따라서 사립학교의 실험·실습등 교육용에 직접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계속 도세(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여 줌으로서 영세사립학교의 육성 지원으로 날로 심각해 지는 산업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도원안대로 의결(참석7인, 찬성7인)

7. 소수의견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필요한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제정조례안